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변경 사유 : ①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양병, 신홍섭 → 정무일, 전춘봉)

②3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5등급 → 4등급)

③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④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⑤제10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0. 7. 22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투자위험등급	3년 수익률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 험등급 변경	5 등급(낮은 위험)	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3년 수익률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 험등급 변경	5 등급(낮은 위험)	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10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7.14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 익률)	제 10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7.14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운용인력 변경  최근 기준으로 기재	주식 책임운용역 : 이양병 채권 책임운용역 : 신홍섭  2019. 11. 30. 기준	주식 책임운용역 : 정무일 채권 책임운용역 : 전춘봉  2020. 6. 30. 기준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해당 클래스만 기재	-	<u>해당 클래스만 기재 및 오 기 정정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운용인력 변경  최근 기준으로 기재	주식 책임운용역 : 이양병 채권 책임운용역 : 신흥섭 2019. 11. 30. 기준	주식 책임운용역 : 정무일 채권 책임운용역 : 전춘봉 2020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 력]	운용인력 변경	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: 신흥섭 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: 양진모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: 이 양병	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: 전춘봉 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 권] : 전춘봉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: 정 무일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	운용인력 변경  최근 기준으로 기재	주식 책임운용역 : 이양병 채권 책임운용역 : 신흥섭 2019. 11. 30. 기준	주식 책임운용역 : 정무일 채권 책임운용역 : 전춘봉 2020. 6. 30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 경 내역	운용인력 변경	-	[주식 책임운용역] 2017.07.27~2020.07.21 : 이양병 2020.07.22~현재 : 정무 일 [채권 책임운용역] 2020.01.09~2020.07.21 : 신흥섭 2020.07.22~현재 : 전춘 봉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해당 클래스만 기재	-	해당 클래스만 기재 및 오 기 정정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 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	(3)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1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 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	(3)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1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 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

		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 한 공모주)	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	제 10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표준편차 : 4.45% 5 등급(낮은 위험)	<u>표준편차 : 7.59%</u> 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 합한 투자자 유형	위험등급 변경 내역	-	<u>2020.07.22 : 5 등급 → 4 등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	제 10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14. 기준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10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14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10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14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 적	제 10 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14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1. 30 기준	<u>2020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		
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		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 원에</u>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 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 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 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
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		

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  
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 
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  
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  
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  
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 
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 
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 
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  
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  
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  
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  
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 
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 
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  
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  
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 
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 
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 
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  
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  
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  
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 
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  
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 
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
는 사항

〈신설〉

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  
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 
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  
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  
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  
다.

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 
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 
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 
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  
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  
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  
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  
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 
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 
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  
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  
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 
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 
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 
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  
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  
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  
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 
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  
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  
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
는 사항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 
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  
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 
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  
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

---

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  
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  
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  
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  
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  
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 
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  
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 
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  
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  
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  
사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  
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 
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 
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 
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  
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  
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 
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  
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 
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  
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 
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  
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 
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 
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  
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  
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  
함

---

			<p><u>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할</u></p> <p><u>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 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</p>	<p><u>한국예탁원</u></p> <p>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u></p>	<p><u>전자등록기관</u></p> <p>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</p>	<p><u>한국예탁원</u></p>	<p><u>전자등록기관</u></p>